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의 노인단독세대로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어야 함.(안 제3조)
- 나. 지원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지원방법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
- 라.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선정함.(안 제6조)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문화 진흥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8일까지(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문교사회전문위원실,전화032-440-6223, 팩스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10,000원 미만 노인단독세대
2.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제4조(지원범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 지원에 관한 시비보조 비

율과 군·구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의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조사실시) ① 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